

1. 인공육(식물성 고기 또는 배양육) 라벨링에 대한 이견

□ 인공육이란, 식물성 고기(plant-based meat) 또는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배양해내는 배양육(cultured meat)으로 나뉨

○ 미국 5개주(미주리, 미시시피, 루이지애나, 사우스다코타, 아칸소) 내에서는 동물의 육질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해서만 “육류”, “소세지”, “육포”, “버거”, “핫도그” 라고 표기 가능함

○ 아칸소 주의 경우 2019년 7월 24일부로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에 대하여 고기종류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(Act 501*)이 발효되었으며, 위반 시에는 각 위반사항마다 \$1,000까지 벌금 부과됨

* Act 501법안 : <http://www.arkleg.state.ar.us/assembly/2019/2019R/Acts/Act501.pdf>

- Act 501법안 내 ‘버거’ 는 전통적으로 가축을 통해서 얻은 고기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지칭하기 때문에, 식물성 고기 또는 배양육을 사용하여 만든 버거는 ‘버거’ 라고 표기할 수 없음. 또한 ‘컬리플라워 라이스(cauliflower rice)’ 또는 ‘아몬드 우유(almond milk)’ 도 실제 ‘rice’, ‘milk’ 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함

- 인공육 가공업체인 Tofurky Company는 연방법원에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2019년 7월 22일에 제소하였음

* 참조 ; <https://www.gfi.org/files/policy/arkansas-tofurky-complaint.pdf>

○ 그 외, 나머지 주 법안 참고

- 미주리 : <https://www.senate.mo.gov/18info/pdf-bill/tat/SB627.pdf>
- 미시시피 : <http://billstatus.ls.state.ms.us/documents/2019/pdf/SB/2900-2999/SB2922SG.pdf>
- 루이지애나 : <http://www.legis.la.gov/legis/ViewDocument.aspx?d=1144034>
- 사우스다코타 : https://sdlegislature.gov/Legislative_Session/Bills/Bill.aspx?Bill=68&Session=2019

2. 시사점

- 야채로 만든 식물성 고기 또는 연구실에서 동물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배양육을 사육 가축을 통해서 얻은 고기와 같이 “육류”로 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. 축산업계에서는 인공육에 대하여 ‘고기’라는 표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, 인공육 가공 업체 및 식물성 고기 단체 등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안이며, 오히려 ‘고기’라고 표기를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 따라서 대미 식물성 고기 수출시 라벨링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3. 관련 웹사이트

<https://www.vox.com/future-perfect/2019/7/22/20706073/arkansas-tofurky-veggie-burger-ban-aclu>

<https://www.npr.org/sections/thesalt/2019/07/23/744083270/what-gets-to-be-a-burger-states-restrict-labels-on-plant-based-meat>

<저작권자 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